

계룡시조례 제 호

계룡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의료업무등의 수당) 영제14조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: 별표1의 지급구분표
2.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: 별표2의 지급구분표

제3조 (장려수당) 영제14조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·하수·폐수·쓰레기처리업무·시체화장 업무 및 공원묘지·납골당의 유지·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	적 요
갑 지	월 909,000원 이하	월 818,000원 이하	동지역
을 지	월 995,000원 이하	월 914,000원 이하	면지역

비고 :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로 한다.

[별표 2]

전임전문직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등 급 별 근무연수별	가 급	나 급
5년 이 상	월 1,312,000원 이하	월 973,000원 이하
4년 이 상	월 1,306,000원 이하	월 967,000원 이하
3년 이 상	월 1,300,000원 이하	월 961,000원 이하
2년 이 상	월 1,295,000원 이하	월 956,000원 이하
2년 미 만	월 1,289,000원 이하	월 950,000원 이하

비고 :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

[별표 3]

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

지 급 대 상	지 급 액
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,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200,000원
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180,000원
③ 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150,000원